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金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
----------	------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2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 김동승,
김진철, 남창진, 우미경,
이신혜, 이해경, 신건택,
조상호, 최호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시민의 호응속에 실시되고 있음.
- 다만 시행과정에서 서울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각각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할 있는 실정임.
-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에 서울시 기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세금을 아끼는 한편 전체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 서울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설></u></p>	<p>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 ----- -----.</p> <p>1.-4. (현행과 같음)</p> <p><u>5. 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u></p>